

# 國家技術資格制度一元化

## 技術教育制度등의 改善策 마련 技術資格取得者의 優待도 保障

- ……科學技術處는 技術과 技能水準의 評價制度를 確立하고……○
- ……技術資格取得者의 優待保障, 技術教育制度등의 改善을 위……○
- ……한 各種 資格制度를 整備, 體系化하는 國家技術資格法施行令을……○
- ……公布했다. 現行의 散發的인 各種資格制度를 一元化하여 技術人力의……○
- ……資質向上과 人力의 地位向上 및 生產性提高에 目的을 訂定……○
- ……府方針으로 國家發展을 위한 技術人力의 養成 및 供給이 크……○
- ……게 展望 된다 ………………○

### 國家技術資格法施行令公布

이 行政令의 主要骨子는 技術資格을 技術系와 技能系로 區分하여 等級을 規定. 技術系는 技術士, 技師 1급, 技師 2급으로 定하고 ① 技術士는 技師 1급의 資格을 가지고 7年以上 경력을 가졌거나 技師 2급의 資格을 가지고 9年以上의 경력을 가진자로 定하며 ② 技師 1급은 大卒의 경우 또는 專門學校나 初大卒業하고 2年以上의 現場경험을 가진자 및 技師 2급의 資格을 所持하고 2年以上의 現場경험을 가진자 ③ 技師 2급의 資格基準은 專門 및 初大卒業者 또는 技能士 1급으로 定하고 技能系

의 경우에는 技能長, 技能士 1급, 技能士 2급, 技能士補로 資格等級을 規定했다.

또 ① 技能長의 資格規定은 技能士 1급의 所持者로 7年以上의 경력이 있는자로 定하고 ② 技能士 1급은 技能士 2급의 소지자 또는 專門學校나 初大卒業者로 3年以上의 경력이 있는자 ③ 技能士 2급은 實業高校 2年修了以上者 또는 職業訓練 1,800時間以上 받은자나 人文高卒業者로 定하고 있다.

이 같은 上位資格등급 획득방법은 國家에서 실시하는 檢定시험에 依하도록 했다.

또한 모든 기술인원은 所屬機關에서 소속되어 있는 技術人의 各單을 科技處에 보고토록 해 있으며 考試에 관한 시험문제만을 과기처에서 관장키로 했다.

이 國家技術資格法은 1973年12月31日 制定公布했으며, 施行令은 1974年 9月27日 國務會議에서 議決 10月16일로 公布施行된 것이다.

國家技術資格法施行令全文은 다음과 같다.

〈편집부〉

## 國家技術資格法施行令 全文

〈上〉

제 1 조(목적) 이 영은 국가기술자격법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 2 조(산업과 관련이 있는 기술분야) 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산업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기술분야는 정보처리·에너지 국토개발·해양 안전관리·생산관리 및 산업응용의 분야로 한다.

제 3 조(기술자격의 등급·기준 및 종목) ①법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술자격의 등급 및 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. 다만, 안전관리분야의 기술계 기술자격의 등급별 기준과 열판리기사 1급·열판리기능사 2급·광산보안기능사 2급·계량기사 2급·자동차정비기사 2급·건설기계기사 2급·건설기계기사 1급·토목기사 1급·토목기사 2급·건축시공기사 1급·건축시공기사 2급·전파통신기사 2급 및 무선설비기사 2급의 기술자격의 기준은 총리령으로 한다.

- 기술계의 기술자격의 등급은 기술사·기사 1급 및 기사 2급으로 구분하고 그 등급별 기술자격의 기준은 별표 1과 같다.
  - 기능계의 기술자격의 등급은 기능장·기능사 1급·기능사 2급 및 기능사보로 구분하고 그 등급별 기술자격의 기준은 별표 2와 같다.
- ②법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술자격의 종목은 별표 3 및 별표 4와 같다.

제 4 조(기술자격의 명칭)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기술자격의 명칭은 그 등급의 앞에 당해 기술자격의 종목을 붙혀 표시한다. 다만, 기술사의 명칭은 “기술사”의 앞에 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해당 기술분야를 붙이고 “기술사”的 뒤에 당해 기술자격의 종목을 괄호안에 넣어

표시한다.

제 5 조(기술자격검정의 소관 주무부장관) 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기술자격검정(이하 “검정”이라 한다)의 소관주무부 장관(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 한다. 이하 같다)은 별표 5와 같다.

제 6 조(검정의 수검의무 대상학교등) ①법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학교는 교육법에 의한 4년제대학(사범대학을 제외한다)초급대학(교육대학을 제외한다). 실업고등전문학교·전문학교·고등학교 및 문교부장관이 지정하는 각종학교로 하며, 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기술분야에 속하는 과정의 학과는 문교부장관이 과학기술처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.  
②법 제5조 제2항에서 “직업훈련법에 의한 직업훈련을 행하는 기관”이라 함은 직업훈련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청장의 인정을 받은 공공직업훈련 또는 사립직업훈련을 행하는 기관을 말하며, 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기술분야에 속하는 직업훈련과정은 노동청장이 과학기술처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.

제 7 조(검정의 기준) 법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정의 기준은 별표 6과 같다.

제 8 조(검정의 방법) ①법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정의 방법은 다음 각호와 같다.  
1. 기술사의 검정은 경력심사·필기시험 및 면접시험의 방법으로 한다.  
2. 기사 1급 및 기사 2급의 검정은 필기시험의 방법으로 한다. 다만, 총리령이 정하는 기술자격종목의 검정에 있어서는 실기시험 또는 면접시험도 과할 수 있다.  
3. 기능장의 검정은 경력심사 및 면접시험의 방법으로 한다.

## —國家技術資格法施行令—

4. 기능사 1급 및 기능사 2급의 겸정은 필기시험 및 실기시험의 방법으로 한다. 다만 종리령이 정하는 기술자격종목의 겸정에 있어서는 실기시험만을 과할 수 있으며, 과학기술처장판이 인정하는 기능경연대회에서 입상한 자에 대하여는 필기시험만을 과할 수 있다.
5. 기능사보의 겸정은 실기시험의 방법으로 한다. 다만, 과학기술처장판이 인정하는 기능경연대회에서 입상한 자에 대하여는 실기시험에 갈음하여 면접시험을 과할 수 있다.
- ②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실기시험은 과목별로 하고, 동항 제4호의 필기시험은 전과목을 혼합하여 행한다. ③주무부장관(제38조의 규정에 의한 위임 또는 위탁에 의하여 겸정을 하는 자를 포함한다. 이하 제10조 내지 제15조·제17조·제19조 및 제37조 제3항에서 같다)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기시험을 행하는 기술자격종목중 종리령이 정하는 기술자격종목의 겸정에 있어서는 실기시험에 갈음하여 실무수습을 받게 할 수 있다. ④겸정은 경력심사·필기시험·실기시험 및 면접시험의 순으로하며, 전순위의 시험(경력심사를 포함한다)에 합격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차순위의 시험을 행하지 아니한다.

**제 9 조** (겸정의 시험과목) 제8조 제1항 각호의 시험의 과목은 기술자격의 종목별로 종리령으로 정한다.

**제10조** (겸정의 시행등) ①주무부장관은 매년 1회이상 겸정을 시행하여야 한다. 다만, 종리령이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려하지 아니한다. ②주무부장관은 종리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매년 2월 15일까지 당해연도의 겸정의 시행계획서를 과학기술처장판에게 송부하여야 하며, 제1항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에 겸정을 시행하지 아니할 경우에도 2월 15일까지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.

**제11조** (겸정의 시행공고) 주무부장관은 겸정을 행하고자 할 때에는 그 기술자격의 등급·종목·

응시자격겸정의 방법·시험과목·일시·장소 및 응시절차를 겸정시행일 90일전까지 공고하여야 한다.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겸정 시행일 30일전까지 이를 공고할 수 있다.

**제12조** (과학기술처장판의 협의) ①주무부장관은 겸정을 시행하고자 할 때에는 법 제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 과학기술처장판과 협의하여야 한다.

1. 겸정을 시행하고자 하는 기술자격의 등급 및 종목
2. 겸정의 시행시기 및 시행지역.
3. 제11조 단서의 규정에 의한 겸정의 시행공고기간의 단축에 관한 사항
4. 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겸정과목의 면제에 관한 사항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종리령으로 정한다.

**제13조** (시험문제의 교부요청등) ①주무부장관은 겸정을 시행하고자 할 때에는 겸정시행일 20일전까지 제3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위탁에 의하여 과학기술처장판이 출제한 당해 겸정의 시험문제의 교부를 그에게 요청하여야 한다. ②과학기술처장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요청을 받은 때에는 그 시험문제를 겸정시행일 10일전까지 주무부장관에게 교부하여야 한다. ③주무부장관은 겸정 종료 후 지체없이 시험문제를 과학기술처장판에게 반납하여야 한다. ④과학기술처장판은 실기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실기시험문제를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기술자격제도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미리 공개할 수 있다.

**제14조** (선다형시험의 채점등) ①주무부장관은 필기시험 종료 후 선다형시험문제에 대하여는 과학기술처장판이 지정하는 기관에 그 채점을 의뢰하여야 한다.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채점의 의뢰를 받은 기관은 그 의뢰를 받은 날로부터 20일이내에 그 채점결과를 주무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

**제15조** (시험위원회) ①주무부장관은 면접시험을

## 國家技術資格法施行令

요하는 검정을 시행할 때에는 그 면접시험을 행하게 하기 위하여 기술자격종목마다 2인이 상의 면접시험위원을 위촉하여야 한다. ②주무부장관은 필기시험(선택형시험을 제외한다)을 요하는 검정을 시행할 때마다 그 필기시험의 채점율 행하게 하기 위하여 기술자격종목마다 2인이상의 필기시험 채점위원을 위촉하여야 한다. ③주무부장관은 실기시험을 요하는 검정을 시행할 때에는 그 실기시험을 행하게 하기 위하여 기술자격종목마다 필요한 수의 실기시험위원을 위촉하여야 한다.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시험위원 및 채점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

**제16조** (합격결정) ①경력심사에 있어서의 합격 결정기준은 총리령으로 정한다. ②기술계의 검정에 있어서의 합격결정은 1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배과목 40점이상 전과목 평균 60점이상으로 한다. ③기능계의 검정에 있어서의 필기시험의 합격결정은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60점이상으로 한다. ④실기시험 및 면접시험의 합격결정은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60점이상으로 한다. ⑤제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실무수습에 있어서는 소정의 과정을 이수한 경우에 이를 합격으로 한다.

**제17조** (합격자의 공고등) 주무부장관은 검정종료후 60일이내에 그 합격자를 공고하고, 합격자에게 합격통지서를 교부하여야 한다.

**제18조** (검정의 일부합격 인정) 검정에 있어서 필기시험에 합격하고 실기시험에 불합격한 자에 대하여는 그 원에 의하여 그 검정종료일로부터 1년간 필기시험을 면제할 수 있다.

**제19조** (검정과목의 면제신청) ①외국에서 자격을 취득한자가 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정과목의 전부 또는 일부의 면제를 받고자 할 때에는 그 면제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주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1. 자격에 관한 증명서의 사본(해외공관장이 확인한 것)

2. 이력서 및 사진(신청일전 6월이내에 촬영한 탈모상반신 명함판 이하 같다. ②다른 법령에 의하여 자격의 취득한자가 법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정과목의 일부의 면제를 받고자 할 때에는 그 면제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주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1. 자격에 관한 증명서의 사본

2. 이력서 및 사진

③기술자격취득자가 법 제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정과목중 충복되는 과목의 면제를 받고자 할 때에는 그 면제신청서를 주문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 ④주무부장관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정과목의 전부 또는 일부의 면제를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신청인에게 필요한 서류 기타 증거물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관계기관에 조회할 수 있다.

**제20조** (기술자격제도 운영위원회) 국가기술자격제도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게 하기 위하여 과학기술처에 기술자격제도 운영위원회(이하 "위원회"라 한다)를 둔다.

**제21조** (위원회의 기능)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

1. 제6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학과 및 직업훈련과정에 관한 사항
2.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시험과목에 관한 사항.
3. 제1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검정시행계획의 조정에 관한 사항
4. 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기술자격취득자에 대한 우대조치의 강구에 관한 사항.
5. 검정제도의 발전에 관한 사항

**제22조** (위원회의 구성) ①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1인을 포함한 20인이내로 구성한다. ②위원장은 과학기술처 차관이 되고 부위원장은 공무원인 위원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는 자가 된다.

< 다음 호에 계속 >